

수원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1006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10065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8 선고 2023가단1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김국종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변론종결 2024. 6. 19.

판결선고 2024. 7.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8. 선고 2023가단17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9행부터 20행까지 “(피고들 주장에도 망 D이 아닌 배우자 E이 이를 변제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지, 판사 김혜진, 판사 박평수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시흥시 L 대 295㎡
2. M 대 153㎡
3. N 대 30㎡ 중
각 1/2 지분. 끝.

